

형 법

<총 평>

- ★ 2014년 경찰채용(순경)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 ★ 이번 시험에서는 총론 8문제, 각론 1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비중은 최근 2-3년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형법각론에만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좋은 결과를 맺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 [총론부분]에서는 ① 죄형법정주의, ② 형법의 적용범위, ③ 인과관계, ④ 법률의 착오, ⑤ 예비·음모와 미수, ⑥ 공동정범, ⑦ 죄수론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 ⑧ 몰수와 추정 등이 출제되었고, [각론부분]에서는 ① 살인의 죄, ② 자유에 대한 죄 종합(협박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③ 강간과 추행의 죄, ④ 업무방해죄, ⑤ 절도죄, ⑥ 사기죄, ⑦ 배임죄, ⑧ 일반교통방해죄, ⑨ 문서에 관한 죄, ⑩ 뇌물죄, ⑪ 공무집행방해죄, ⑫ 무고죄 등이 출제되었다.
- ★ 한편 이번 시험 역시 ‘거의’ 100% 판례로만 지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정확하게는 84개의 지문 중 1개의 지문을 제외한 83개의 지문이 판례). 따라서 판례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고득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을 등한시해도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결국 이번 시험에서도 형법‘이론’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형법이론문제가 2011.8.에 실시된 시험 이후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는 출제당국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극단적인(?) 판례의 출제는 수험생에게 그 많은 형법판례를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결국은 사법작용의 제1차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각종 사례에 있어서 스스로의 사고에 의한 형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탄탄해야만 하고, 이는 수험생일 때 가장 잘 확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

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③

[2014 경찰채용]

- 해설** ㉠(×).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2998). <송형총 18면>
- ㉡(○). 대판 2002.12.27., 2002도2539. <송형총 39면><기출판례총정리 21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가)목, 제5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내용에 더하여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

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 그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법 및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종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고시를 통하여 그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3.6.13., 2013도1685). <최신판례특강자료 3면>

㉠(○). 대판 2008.4.24., 2006도8644. <송형총 48면><기출판례총정리 22면>

㉡(○).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원합의체판결. <송형총 35면><기출판례총정리 20면>

문 2. 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에서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 ㉡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 ㉢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변호사법(2000.1.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① ㉠(○), ㉡(○), ㉢(○), ㉣(○)

② ㉠(X), ㉡(○), ㉢(○), ㉣(○)

③ ㉠(X), ㉡(X), ㉢(○), ㉣(X)

④ ㉠(X), ㉡(○), ㉢(X), ㉣(X)

정답 ②

[2014 경찰채용]

해설 ㉠(X).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대판 2001.9.25., 99도3337). <송형총 77면><기출판례총정리 33면>

㉡(○). 대판 2011.8.25., 2011도6507. <송형총 78면><최신판례특강자료 31면>

㉢(○). 대판 2002.11.26., 2002도4929. <송형총 78면><기출판례총정리 33면>

㉣(○). 대판 2000.4.21., 99도3403. <송형총 76면><기출판례총정리 32면>

문 3.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통제·관리하지 않은 부분과 甲의 사망 간의 관계
- ②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11세 정도의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1단 기어를 넣고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 차에서 떠난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관계
- ③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간의 관계
- ④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

정답 ①

[2014 경찰채용]

해설 ①(X).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發汗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처음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
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
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찜
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
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2.11., 2009도
9807). <송형총 169면><전범위모장 제1회 6번><최종
정리일일특강자료 사시 35번>

- ②(○). 대판 1986.7.8., 86도1048. <송형총 135면><기출판례총
정리 58면>
③(○). 대판 2001.6.1., 99도5086. <송형각 568면><기출판례총
정리 60면>
④(○). 대판 1990.10.16., 90도1786. <송형총 191면><기출판례
총정리 84면>

문 4.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②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기
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
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
한 경우
③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
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
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
서를 배부한 경우

정답 ④ **[2014 경찰채용]**

해설 ①(×). 피고인의 주장 및 기록에 의하면, 삼원농산은 남원시
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고 이 사
건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의약품 제조행위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범행이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
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판 2004.1.15., 2001도1429). <송형총 303면>

- ②(×). ... 위 위원회들이 시정요구나 형사처벌 등을 요청하지 아
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만 판정하였다는 점이 곧 그러한
판정을 받은 만화가 음란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
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6.4.28., 2003도4128). <송형총 304면>
③(×).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
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
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
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8.26., 94도780).
<송형총 303면><기출판례총정리 125면>
④(○). 대판 2005.6.10., 2005도835. <송형총 309면><기출판
례총정리 131면>

문 5. 다음은 예비·음모 및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특수도주죄(형법 제146
조),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미수범 처벌규
정이 있다.
②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하나, 예비죄의
중범의 성립은 부정한다.
③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
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
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2014 경찰채용]**

해설 ①(×). 협박죄와 특수도주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증거인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그 미수처벌규정이 존
재하지 않는다. <최종정리일일특강자료 보충문제 11-12
번>
②(○). 대판 1976.5.25., 75도1549. <송형총 364면><기출판례
총정리 157면>
③(○). 대판 2006.9.14., 2004도6432. <송형총 361면; 송형각
289면><기출판례총정리 338면>

④(○). 대판 1999.4.13., 99도640. <송형총 344면><기출판례총정리 148면>

문 6. 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 ㉢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외에 강요죄도 성립한다.
-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감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2014 경찰채용]

- 해설**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5.10., 90도2102). <송형각 78면><기출판례총정리 259면>
- ㉡(○). 대판 1995.9.29., 94도2187. <송형각 79면><기출판례총정리 262면>
- ㉢(×).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행위는 포함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5.6.25., 84도2083). <송형각 85면><기출판례총정리 264면>

㉣(○). 대판 1998.5.26., 98도1036; 대판 2000.3.24., 2000도102. <송형각 90면><기출판례총정리 266면>

㉤(○). 대판 1998.5.26., 98도1036. <송형각 92면·98면><기출판례총정리 267면>

문 7.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 ②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
- ③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은 행위
- ④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정답 ①

[2014 경찰채용]

- 해설** ①(○).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 <송형총 466면><기출판례총정리 197면>
- ②(×).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7.7.25., 97도1142). <송형총 469면><기출판례총정리 200면>
- ③(×).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면 이는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판 1980.1.0.14., 80도2155). <송형총 470면>
- ④(×).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9.11., 2008도5364). <송형총 468면><기출판례총정리 198면>

문 8. 다음은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②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 ③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도 금품 그 자체이다.
- ④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정답 ③ **[2014 경찰채용]**

- 해설** ①(○). 대판 1992.7.28., 92도700. <송형총 523면><기출판례총정리 220면>
 ②(○). 대판 2006.9.14., 2006도4075. <송형총 519면><기출판례총정리 216면>
 ③(×).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 대여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대판 2007.3.30., 2006도7241). <송형총 528면><기출판례총정리 218면>
 ④(○). 대판 2008.10.9., 2008도6944. <송형총 529면><기출판례총정리 219면>

문 9.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설사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②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甲에게 양도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

령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2014 경찰채용]**

- 해설** ①(○). 대판 1971.5.24., 71도399. <송형각 167면>
 ②(○). 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판결 등. <송형각 173면><기출판례총정리 294면>
 ③(×).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의 甲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의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9., 83도2270). <송형각 177면><기출판례총정리 296면>
 ④(○). [다수의견]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전국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에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보류결정의 경위 및 내용, 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 이후에도 노사 간에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직후 위 직권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점을 감안할 때, 한국철도공사로서는 노동조합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권중재회부 시 쟁의행위 금지규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파업의 결과 수백 회에 이르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중대한 손해를 끼친 사정들에 비추어, 위 파업은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 <송형각 180면>

문 10. 다음은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것에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③ 형수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으나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의 머리부분에 맞아 조카가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정답

④

[2014 경찰채용]

해설

- ①(○). 대판 1991.10.22., 91도2174. <기출판례총정리 237면>
- ②(○). 대판 2006.4.14., 2006도734. <송형각 12면><기출판례총정리 237면>
- ③(○). 대판 1984.1.24., 83도2813. <송형총 160면><기출판례총정리 67면·238면>
- ④(×). 경찰관이 질주하는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동차에 적재되어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차를 명함에 있어 화주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차로부터 추락시킨 결과 사망케 한 경우 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대판 1957.5.24., 4290형상56). <송형각 14면>

문 11. 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 ②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 ③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

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④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2014 경찰채용]

해설

- ①(○). 대판 2007.1.25., 2006도5979. <송형각 111면><기출판례총정리 272면>
- ②(○). 대판 2007.1.25., 2006도5979. <송형각 111면><기출판례총정리 272면>
- ③(○). 대판 1994.8.23., 94도630; 대판 2002.4.26., 2001도2417 등. <송형각 111면><기출판례총정리 272면>
- ④(×).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3.9.26., 2013도5856). <최신판례특강자료 82면>

문 12. 다음은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중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

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④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
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
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
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①

[2014 경찰채용]

해설

- ①(×).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대한 이상 사기의 실
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
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
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대
판 1997.9.12., 97도1706). <송형총 392면><기출판례
총정리 169면>
②(○). 대판 2000.4.7., 2000도576; 대판 2004.6.24., 2002도
995 등. <송형총 389면><기출판례총정리 168면>
③(○). 대판 1982.6.8., 82도884. <송형총 398면><기출판례총
정리 171면>
④(○). 대판 2010.7.15., 2010도3544. <송형총 406면><기출판
례총정리 175면>

문 13. 다음은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해자는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
원을 대여하고 그런 내용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
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
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
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
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
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
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
을 처분할 적절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2014 경찰채용]

해설

- ㉠(×).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의 순위는 저당물건의 가액으로
부터 어느 저당권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
는 재산상의 이해에 관하여 우열을 정하는 것이므로 본건
에서 피해자는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여하고 그런 내용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의뢰자인 본인
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2.11.9., 81
도2501). ★ 사문서위조·동행사죄와 배임죄의 경합범을
인정한 판례이다. <송형각 466면>
㉡(×). [1]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
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하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
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사안에서, 전산상 외상대금채권이 자동 차감된다는 사정만
으로 회사의 외상매출금채권이 감소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
하여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6.7.27., 2006도3145). <송형각 472
면><기출판례총정리 398면>
㉢(○). 대판 1999.9.17., 97도3219 등. <송형각 418면>
㉣(×).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행한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부
담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나아가 금원의 대여자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회사가 대여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
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로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
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4.4.9., 2004도771). <송형각
470면><기출판례총정리 393면>
㉤(×). [1]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
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체결행위만
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
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배임죄 구

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11.11.24., 2010도11394). <송형각 474면><최신판례 특강자료 137면>

문 14. 다음은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 ④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한 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② **[2014 경찰채용]**

- 해설** ①(○). 대판 2006.7.27., 2006도3126. <송형각 368면><기출판례총정리 361면>
- ②(×). [1]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2]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2.9.6., 2002도3465). <송형각 236면><기출판례총정리 316면>
- ③(○). 대판 2000.2.25., 99도5775. <송형각 216면><기출판례총정리 312면>
- ④(○). 대판 1998.4.24., 97도3425. <송형각 218면><기출판례총정리 312면>

문 15.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된다.
- ㉢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 ㉣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2014 경찰채용]

- 해설**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 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10.5.27., 2010도3498). <송형각 295면><기출판례총정리 345면>
-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2.11.22., 2000도4419). <송형각 337면><기출판례총정리 345면>
- ㉢(○). 대판 2010.2.11., 2009도12627. <송형각 239면><기출판례총정리 319면>
- ㉣(○). 대판 2007.7.12., 2005도9221. <송형각 338면><기출판례총정리 346면>
- ㉤(○). 대판 2007.1.11., 2006도4498. <송형각 331면><기출판례총정리 343면>

문 16.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④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정답

④

[2014 경찰채용]

해설

- ①(○). 대판 1981.7.28., 81도898. <송형각 641면><기출판례총정리 457면>
- ②(○). 대판 2009.1.30., 2006도7777. <송형각 609면><기출판례총정리 446면>
- ③(○). 대판 1985.1.22., 84도2422. <송형각 621면><기출판례총정리 451면>
- ④(×).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9.24, 91도1733). <송형각 609면><기출판례총정리 각론보충자료 44번>

문 17.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우,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2014 경찰채용]

해설

- ①(○). 대판 2011.5.26., 2010도10305; 대판 2011.4.28., 2007도7514 등. <송형각 763면><기출판례총정리 507면><최신판례특강자료 188면>
- ②(○). 대판 2009.3.12., 2008도7156. <송형각 770면><기출판례총정리 509면>
- ③(×).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목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9.13, 2010도6203). <송형각 764면><최신판례특강자료 192면>
- ④(○). 대판 1999.9.21., 99도383. <송형각 762면><기출판례총정리 506면>

문 18.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

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 ㉕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여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2014 경찰채용]

해설

- ㉑(×).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4.12.22., 94도2528). <송형각 379면><기출판례총정리 369면>
- ㉒(○). 대판 2000.1.28., 99도4022. <송형각 730면><기출판례총정리 492면>
- ㉓(×).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7.10.12., 2005도7112). <송형각 735면><기출판례총정리 500면>
- ㉔(○). 대판 2007.8.23., 2007도4956; 대판 2007.4.27., 2005도4204 등. <송형각 734면><기출판례총정리 492면>

문 19. 다음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 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 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옥외 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

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 ③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2014 경찰채용]

해설

- ①(○). 대판 1994.11.4., 94도2112. <송형각 572면><기출판례총정리 431면>
- ②(○). 대판 2008.11.13., 2006도755. <송형각 573면><기출판례총정리 432면>
- ③(×).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1992.8.18., 91도2771). <송형각 572면><기출판례총정리 432면>
- ④(○). 대판 1999.7.27., 99도1651. <송형각 572면><기출판례총정리 431면>

문 20. 다음은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에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③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②

[2014 경찰채용]

해설

- ①(○). 대판 2006.5.25., 2005도4642 등. <송형각 822면><기출판례총정리 541면>
 ②(×).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송형각 824면><기출판례총정리 539면>
 ③(○). 대판 2006.5.25, 2005도4642 등. <송형각 825면><기출판례총정리 540면>
 ④(○). 대판 1996.2.9., 95도2652 등. <송형각 827면><기출판례총정리 538면>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